
학생 생활 규정



장훈고등학교

학생 생활 규정

(2024.12.04. 전부 개정)

생활복지부

제1장 학생생활규정 총칙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장훈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하 "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 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의식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근거법령】 이 규정은 「대한민국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이하 "조례") 등에 근거하여 학생생활규정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 【원칙】 ① 이 규정은 학교생활에서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무차별의 원칙, 최선의 이익 원칙, 생존·보호·발달의 원칙, 참여의 원칙을 적용한다.

② 학생 인권에 대한 제한은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학생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③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④ 이 규정은 자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명확한 용어로 분명하게 제정되어야 한다.

제5조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학생생활교육¹⁾”이란 자신의 삶의 주체로서 학생이 일상의 전반에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일련의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5.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6.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든 소통 활동을 말한다.
7.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8.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9.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10.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제6조 【교육 3주체의 책무 등】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직원 및 다른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단, 학생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된다.

③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교육을 존중하고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게 대한 인권 존중
2. 학교 공동체 구성원 간에 합의된 학교 규범의 준수

1)「고시」 “제2조(정의)” 4항에서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하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생을 삶의 주체로서 인정하는 교육적 가치를 반영하여 “고시”의 ‘학생생활지도’를 ‘학생생활교육’의 용어로 안내함

3.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신체적·언어적 폭력의 금지
4. 다른 학생의 학습권 존중과 수업활동에 대한 방해 금지
5.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수업 및 생활교육 등)에 대한 존중 및 방해 금지
6. 흉기, 마약, 음란물 등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해하거나 학습권을 침해하는 소지품의 소지 금지

- ④ 학교의 장(“학교의 설립자, 경영자 및 법인”등을 포함)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교육을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⑥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교육을 위하여 시설, 인력 등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 ⑦ 학교의 장은 교원의 상담 활동에 필요한 상담시설을 구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상담 활동 운영에 참여하여야 한다.
- ⑧ 교원은 상담을 위한 최신의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정보와 지식을 습득·유지하기 위해 교육과 연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⑨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교육을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7조 【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와 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2장 학생생활교육

- 제8조 【생활교육의 범위 및 방식】**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를 비롯하여 고시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이 학생생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보상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다.

제9조 【시설 이용 및 환경】 ① 학생은 학교에서 마련한 절차에 따라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 받을 권리와 휴식 장소, 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②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③ 학생은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② 학생이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훼손하는 등으로 손해를 입혔을 때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1조 【휴식시간】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의사에 반하여 정규 교육 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등으로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25조에 따라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학생을 특정 장소로 분리할 때에는 학생의 휴식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2조 【교우관계】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 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3조 【폭력예방】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 구성원은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활용할 수 있다.

1.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2.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함
3. 경찰청 범죄 신고 117, 112 등

③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하여 보호를 받는다.

제14조 【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①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제15조 【동아리활동】 특기·적성 교육과 계발활동(클럽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은 계발활동(클럽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도록 노력한다.
2.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 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창의인재부(관련지도부)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3.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4.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5.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교내 휴식 시간 및 여가 시간을 적절히 활용한다.

1. 여가 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2. 여가 시간에는 특별실(전산실, 음악실,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3.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7조 【용모 및 복장】 ① 학생은 두발, 복장, 장식 등 용모에 관하여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된 용의복장규정을 따른다.

② 교내에서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되,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기타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지정된 교복 이외의 사복 착용을 허용하지 않는다).

③ 복장의 부착물(명찰, 교표 등)은 소정의 위치에 부착한다.

④ 체험학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을 착용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⑤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는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등·하교 시 슬리퍼 착용을 허용하지 않는다.)

⑥ 학생은 용모에 있어서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한다.

⑦ 장발, 염색, 파마, 문신, 귀걸이, 피어싱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

(장발의 기준은 귀 아래 10cm로 한다.)

⑧ 학생은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⑨ 학교의 장과 교원은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하여 용모 및 복장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으며, 지도에 관한 사항은 학생이 참여한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 절차를 거쳐 정할 수 있다.

제18조 【휴대전화의 소지 및 사용】 ① 학생은 휴대전화(“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휴대용 전자기기를 포함”)를 조례 시 제출하며, 담임교사는 수거한 휴대전화를 학년부에 보관하고 종례 시 학생들에게 돌려준다.

(수업시간 또는 이에 준하는 시간에는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 【정보통신 윤리】 ① 학생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소지하거나 유통해서는 안 된다.

④ 학생은 사이버 도박 등의 위법한 방법으로 영리를 취하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학생은 상대방의 동의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음성이나 모습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거나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⑥ 학생과 보호자는 교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나 카메라, 녹음기 등을 이용하여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교원·학생 간 대화 등) 등을 실시간으로 청취하거나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20조 【물품 소지·사용 금지 및 분리·보관 등】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소지·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학생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수업 중 휴대전화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장난감, 해당 교과와 관련 없는 서적, 허가받지 않은 녹음기, 이어폰, 전자기기, 화장품 등)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가. 성냥,ライター, 폭죽, 드라이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 나. 흉기, 칼, 쇠 파이프, 공구류, 장난감 총 등 타인에게 해를 가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
 - 다. 레이저빔 기기 등 빛을 쏘아 실명 등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기구
 - 라.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도구 또는 장치
 - 마. 기타 위 각 목에 준하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가. 담배(전자담배 포함), 주류, 마약 등 향정신성 약물 일체
 - 나. 부탄가스, 본드 등 환각물질 일체
 4. 그 밖에 소지·사용이 금지된 물품
 - 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 나.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 다.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 라. 개인 이동 수단(PM), 차량 및 오토바이 등의 교내 운행 차량
 - 마. 기타 위 각 목에 준하는 물품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한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비롯하여 다양한 생활교육을 적용할 수 있다.
- ③ 물품에 따른 분리 요건·기간·장소·방법 등은 아래 표에 따른다.

분리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호	수업 중 허가받지 않은 휴대전화 및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	수업 시간	교탁 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 • 수업 종료 후 : 학생에게 되돌려줌 • 단, 휴대전화는 본교 학생생활규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무단소지 적발 시 경고 없이 즉시 수거하여 해당 학급 휴대전화 보관함에 분리·보관할 수 있다.
2 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일	학년부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교원은 분리·보관 사유, 기간, 방법 등을 해당 학생에게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보고 (물품 분리보관 신고서 작성) • 학교의 장은 보호자에게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알림 •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보호자에게 되돌려줌 ※ 보호자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²⁾ 가능 (물품 폐기 확인서 작성)
3 호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호	그 밖에 소지·사용이 금지된 물품			

④ 물품 분리 시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지도 불응 시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지도 및 징계할 수 있다.

⑤ 교원은 제3항 제2호, 제3호, 제4호에 따라 분리 및 보관을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1조 【소지 물품 조사】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³⁾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하여서는 안 된다.⁴⁾ (단, 불응 시 정당한 지시 불이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② 물품 조사 시 학생에게 검사의 목적과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학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 물품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교원은 소지 물품 조사의 목적, 이유, 절차, 학생

2) 물품을 폐기하는 경우 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을 듣고 진행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3) 해당 학교 구성원이나 CCTV에 의해 학생의 소지·사용을 금지한 물품을 목격 및 구체적인 소지 신고가 있거나 절도 등이 명확히 식별되었을 경우, 자해 또는 자살 등의 가능성이 있는 물품 소지 신고가 들어왔거나 목격한 경우, 약물 오·남용 등의 가능성이 있거나 목격한 경우
4) 또한 불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조사는 실시할 수 없다.

의견을 기재하여 이를 생활교육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교원은 소지 물품 조사 과정에서 학생 개인 신상 정보를 침범하거나 개인의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학생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낄만한 표현이나 언행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2조 【보건 및 안전】 ① 학생은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일절 하지 않는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④ 학생은 교내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체험활동 및 단체 활동 포함)에 참여할 때 지도 교원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에 유의한다.

⑤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대책 등을 수립할 때 학생, 보호자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안전 계획에 제시된 매뉴얼에 따라 행동한다.

제23조 【인성 및 대인관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학생으로서 바른 마음가짐이나 사람됨을 나타내는 태도와 행동, 예절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 중에 일어나는 학생들의 부적절한 언어 사용(사이버 공간을 포함한다) 등 의사소통 행위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학생의 부적절한 행위 및 태도 등을 지도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간의 갈등 상황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거나, 학교폭력이라 하더라도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 등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을 위한 생활교육을 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생활교육만으로 학생의 인성 및 대인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는 사항은 관계기관 인계 또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24조 【학습권 보호】 ① 학생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 및 환경에 맞게 합당한 학습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임신·출산·이성교제를 이유로 학습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징계를 내려서는 안 된다.

제25조 【교육활동 중 학생 분리】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② 교육활동 중 학생 분리에 따른 요건, 분리 기간과 장소, 방법은 다음 표와 같다.

생활교육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방법	학습지원
1호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	수업 중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어 2회 이상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교육 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 ⁵⁾	교실 내 다른 좌석 등 수업 교원 지정 장소 (수업 시간 내 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된 좌석 및 위치로 이동하도록 지시, 주의를 준 후 실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학생을 분리할 수 있음 단, 실외 공간일 경우 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분리 위치를 교원이 정할 수 있음 학생이 교육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보일 때 복귀를 지시할 수 있음 	해당 좌석 및 위치에서 앉거나 선 상태에서 교원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2호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1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지속 방해하여, 교육활동 진행이 심각하게 어려울 경우 ⁶⁾	사물함 앞, 교실 뒤편, 운동장 스탠드, 강당 뒤편 등 (수업 시간 내 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에게 수업 방해 금지, 자리 이동 금지 등 주의를 준 후 실시 자기 책상과 의자를 복도로 옮겨 성찰 과제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 	수업 참여, 필요시 성찰 과제 부여 가능
3호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p>가</p> <p>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 활동을 지속 방해하는 경우</p> <p>나</p> <p>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② ‘가’ 또는 ‘나’에 따른 지도에도 불구하고 1일 이내 재차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③ 교사의 신변을 위협하는 행동을 한 경우 ④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p>	교무실 등 (수업 종료 시 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원이 학생보호인력에게 학생 인계 요청 해당 학생은 학생보호인력과 함께 지정 장소로 이동 보호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필요시 추수 지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 	필요시 성찰 과제 부여 가능
4호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p>가</p> <p>수업 시간에 지각하여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p> <p>나</p> <p>① 제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p>	<p>가</p> <p>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p> <p>나</p> <p>교무실 등 (60분 이내)</p>	<p>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심시간 활용 시 식사에 필요한 최소 시간(20분) 보장 <p>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규수업이 끝난 뒤 학생을 남겨 교육하고자 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 	필요시 성찰 과제 부여 가능

※ 성찰 과제는 행동 성찰문, 교과서 요약, 학습 용어 정리 등 지도교원이 상황에 맞게 제시
 ※ 관련 학생의 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생활교육 절차에 따라 진행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시 분리 요청 교원은 필요시 분리 학생에게 ‘성찰 과제 부여’ 또는 ‘학생 상담’ 등을 실시하고 학생 분리 내용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다.⁷⁾

- 5) (예시) 교사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주변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여 학생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는 경우
 6) (예시) 수업 활동과 무관하게 떠돌아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수업과 무관한 질문을 계속하여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수업 활동과 무관하게 교실 내를 돌아다니거나, 교실 밖을 교사의 허락 없이 지속해서 드나들어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수업 활동과 무관한 활동을 하여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7) 학생 분리 지도 대장 활용

③ 교원은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생활교육을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이 제1항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은 보호자 인계 시각 또는 하교 시각까지 분리장소에서 대기한다.

제26조 【생활교육 불응 시 조치】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교육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규정 제2장(학생생활교육)의 생활교육에 대해 학생이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경우 교원의 요청에 따라 ‘생활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제27조 【이의제기】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교육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28조 【학급 내 봉사활동】 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주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급환경 정돈, 출결 사항 점검, 학급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봉사한다.
2. 청소 구역의 청소 상태를 확인한다.
3. 학급 비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4. 소정의 등교 시간(07:40) 보다 일찍 등교하여 활동에 임하고 종례 후 정리 정돈을 한다.

제29조 【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교사의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회합을 하고자 할 때
2.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30조 【교외생활】 학생은 교외 생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학교 교직원 및 상급 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성실히 지킨다.
4. 본교 이외의 단체 혹은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하고자 할 때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교통법규를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7.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8.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및 불법취업을 금한다.

제31조 【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 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 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3장 생활교육위원회 운영 및 징계

제32조 【생활교육위원회의 구성】 ① 학생의 생활교육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감, 생활안전부장, 교무입학부장, 상담교사, 생활교육 담당 교원(사안계) 등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사안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학생 소속 학급 담임교사나 보호자 대표를 참석시킬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교감이 위원장이 되고, 생활안전부장(또는 담당 교원)이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생활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생활교육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소위원회는 생활안전부장(또는 학년부장)이 위원장이 되고, 학년부장, 생활교육 담당교원, 상담교사 등으로 구성하며, 학교생활교육 담당교원이 사무를 주관한다. 특정 학생에 관한 사안을 다루는 경우에는 담임교사를 참석시킬 수 있다.

제3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교육 업무 담당부장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심의·의결한다.

② 생활교육소위원회는 ‘학교내의 봉사’ 이하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교육 업무 담당교원의 제청으로 생활교육 업무 담당부장(또는 학년부장)이 소집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으며, ‘사회봉사’ 이상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활교육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③ 학교의 장은 생활교육위원회 또는 생활교육소위원회의 심의 없이 징계 조치를 해서는 안 되며,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의 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제34조 【의결 정족수】 생활교육위원회 및 생활교육소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5조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교의 장 및 교원은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의 결정 및 그 집행의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생의 징계는 징계 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 기회의 보장, 재심의 및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정당한 규정과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들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 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보호자 및 지역사회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들은 징계 대상 학생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안 된다.

제36조 【징계 원칙】 학생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모든 과정에서 학생의 인격은 존중되어야 한다.

2. 학생의 징계는 학생 선도에 중점을 둔다.
3. 학생의 징계는 교육적인 면을 참작하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교육할 때,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징계 시에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해야 하며, 반드시 징계 사유, 징계 기준, 징계 재심(의) 청구 절차 등을 서면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안내하여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보장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6. 학교의 장은 장애 학생, 다문화 학생, 미혼모 등 소수자 학생이 생활교육(소)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진술권 보장을 위한 특별 지원 절차(신체적, 언어적 측면 모두 포함) 및 학생의 개인정보(폭력 피해 경험 포함) 보호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조사와 징계 과정에서 학생의 인격권이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7.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

제37조 【징계의 종류와 기간】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으며, 학생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내의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생활안전부(생활교육 담당 부서)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봉사단체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실시할 수 있다. ‘학교내의 봉사’는 1회 최대 15시간 이내의 시간으로 하되, 창의적 체험활동의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징계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봉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사회봉사’는 1일 최대 6시간 이내, 조치별 30시간 이내 기간으로 하되 반드시 이수증 또는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출석으로 처리하며, 창의적 체험활동의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특별교육 이수⁸⁾’는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및 교육방법을 이용하거나, 소속 학교에서 운영하는 특별교육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실시할 수 있다. 학교나 지정 위탁 기관의

8) 교육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특별교육 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31조(학생의 징계 등)④항]

특별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후, 이수증 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출석으로 처리한다. 이수 시간 및 기간은 기관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4. ‘출석정지⁹⁾’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보호자의 책임하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며, 출석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및 교육방법을 이용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학생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미인정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5. ‘퇴학처분¹⁰⁾’은 학교의 장이 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여할 수 있다. ‘퇴학처분’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학교의 장은 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실시하여야 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 【징계통보 및 진술권 보장】 ① 생활교육(소)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업무 담당 교원(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할 수 있다. 단, 의견 청취는 의견서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생활교육(소)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생활교육(소)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징계 절차를 개시한 이유, 의견진술 기회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39조 【심의 확정, 징계통보 및 학교의 장 재심의 요구】 ① 학교의 장은 생활교육(소)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 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결정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학생생활교육에 협조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생활교육(소)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9) ‘출석정지’란 대상 학생이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로 ‘등교정지’와는 구분되며,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교육상 필요한 경우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10)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퇴학처분은 중징계에 해당하므로 매우 신중해야 하며, 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등 최소 3회 이상의 단계적 징계 이후 개전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 퇴학처분 조치를 부과하도록 한다.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재심이는 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되 재적 위원 2/3 이상 참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0조 【평가 응시 및 학습권 보장】 징계 기간 중의 학생이라도 평가(고사 및 수행평가 포함)에 응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단, 평가(고사 및 수행평가 포함) 및 행사 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41조 【징계에 대한 재심의 요구】 ① 제3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징계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학교의 장에게 그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징계 조치의 집행은 재심의 결정까지 그 효력을 중지한다.

② 학교의 장은 재심의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학생 또는 보호자가 재심의를 청구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련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 피청구인
3. 징계 조치가 있음을 안 날
4. 재심의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제42조 【퇴학처분에 대한 징계 재심청구】 퇴학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이나 그 보호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에 따라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43조 【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① 학교의 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선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징계 중인 학생이 재차 징계 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거나 징계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44조 【사후 조치】 ① 담임교사와 상담교사 등은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지속적으로 관찰·지

도한다.

②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대안교육, 재입학 및 편입학, 검정고시,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등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안내해야 한다.

제45조 【징계의 기준】 ① 학생에 대한 징계 양정은 사안의 경중과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다.

② 학생 사안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은 <별첨1>에 따른다.

③ 생활평점제를 운영할 경우 벌점은 교육적 수단으로만 사용하며 학생 징계는 구체적 행위에 대한 생활교육(소)위원회 심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제4장 생활평점제

제1절 상점제

제46조 【방침】 ① 상점은 선행 학생 추천 및 개인 벌점(징계 통보 10일 이내)을 감하는 데 각각 이용한다. (단, 생활안전부(생활교육 담당 부서)에 사전 허락을 득해야 한다.)

② 모든 학생에게 귀감이 되는 행동을 한 학생에게 상점을 부여하고, 통산 점수가 우수한 학생(20점 이상)은 학기별로 학교장 표창을 한다.

③ 동일 학생에게 같은 이유로 중복하여 상점을 부여할 수 없다.

④ 학기별 상·벌점 통산 점수가 우수한 학급(평균 상점 10점 이상)은 모범학급 표창을 한다.

⑤ 제2항과 제4항은 담임교사 외 타 교사의 기준 총점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제47조 【운영방법】 ① 선행항목을 정해 그 항목에 따라 부여된 점수를 아래의 학생 상점 내용에 따라 기록하고, 월별로 통계처리 한다.

② 상점으로 벌점을 감할 수 있다.

③ 상점제는 학년도 단위로 운영하며 상점은 학년말에 소멸된다. 단, 재학 중에는 기록·보관한다.

④ 상기 누계 점수는 학년말 담임선생님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다.

- ⑤ 선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칭찬을 통해 동기를 부여하고, 선행이 여러 차례 반복될 시 상점을 부여 한다.
- ⑥ 동일 학생에게 같은 이유로 중복해서 부여할 수 없다.
- ⑦ 작성한 상점 카드는 해당 교사가 상·별점 담당 교사에게 제출하고, 담당 교사는 상점 카드를 보관 및 통계처리 한다.
- ⑧ 청소 당번이 청소하는 것과 같이 맡은 일을 수행하는 경우는 상점 부여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⑨ 별도의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받을 경우는 상점 부여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⑩ 상별점제는 교내생활을 중심으로 하나 교외 생활을 포함할 수 있다.

제48조 【상점의 기준】 상점의 기준은 <별첨 2>로 정한다.

제2절 별점제

제49조 【방침】 ① 별점 부과보다는 체벌 대체 학생지도에 역점을 둔다.

- ② 자율적인 생활 능력의 함양을 기본으로 한다.
- ③ 학생의 자율적인 선도 차원에서 실시한다.

제50조 【운영방법】 ① 위반 내용이 경미한 경우 현장에서 훈계를 통해 지도한다. 이때 학생이 훈계를 수용하지 않거나 수용 태도가 불량하여 정식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점을 부여한다.

- ② 학생들이 피해 의식을 갖지 않도록 취지를 충분히 납득하게 하여 지도한다.
- ③ 별점 부여 시 별점카드를 발급하며 “학생 확인란”에 위반 학생의 자필 서명을 받는다.
- ④ 제3항의 별점카드는 반드시 발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별점카드 미발급 시 별점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점을 부여할 수 없다.
- ⑤ 당일 시정이 불가능한 사안에 대해 이중 처벌 받지 않도록 한다.
- ⑥ 작성한 별점 카드는 상·별점 담당 교사에게 제출한다.
- ⑦ 담당 교사는 별점 카드를 보관 및 통계처리 한다.
- ⑧ 별점카드 발부 시 이의가 있는 학생은 담임교사, 상·별점 담당 교사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⑨ 별점 담당 교사는 이의 신청 내용을 발급 교사와 상의하여 조절할 수 있다.
- ⑩ 별점 담당 교사는 각 지도 단계에 해당하는 학생을 담임교사에게 통보하여 지도하게 하며, 3단계부터는 학부모 내교를 요청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교직 준수 서약서를 받는다. 또한 담임교사는 생활안전부(생활교육 담당 부서)의 지도가 종료되면 학생 성찰문과 지도 관련 서류를 상·별점 담당 교사에게 제출한다.

제51조 【별점 과득점 학생 단계별 지도】 별점 항목 위반 시 별점 누적 점수 합계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처분을 내린다.

① 별점에 따른 단계별 지도 내용

단계	누계점수 (이상)	지도교사	내용	비고
1단계	10	담임교사	담임선생님 지도 (교내봉사처분 가능)	
2단계	15	담임교사 및 생활교육 담당교사	교내봉사	
3단계	20	생활교육담당교사	사회봉사	
4단계	30	생활안전부장	특별교육이수	
5단계	40	생활안전부장	출석정지	

- ② 규정된 실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도 점수는 계속 누계되며, 절차에 불응하는 학생에게는 생활교육의 단계를 올려 시행하고, 징계 수행에 무성의하게 임하는 경우 지도담당교사는 생활교육(소)위원회 절차를 거쳐 봉사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위의 과정에서 이수한 봉사활동은 개인 봉사활동 실적에 가산되지 않는다.
- ④ 별점 보유자는 각종 추천 및 시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

제52조 【별점 기준】 별점의 기준은 <별첨3>으로 정한다.

제3절 시상

제53조 【종류】 본교 학생의 시상은 내용에 따라 학년협의회 또는 교직원 회의 심의를 거쳐 아래의 각 호와 같이 학교장이 결정 수여한다. 단, 특별상은 예외로 한다. 순위 선정이 필요한 경우 최우수상(1위), 우수상(2위), 장려상(3위)으로 한다.

1. 우등상- 학력 부문(재적학생의 4% 이내)
2. 장훈 인성상 - 용의복장 단정, 예의, 질서, 청결을 실천하는 학생
3. 공로상 - 학교에 명예와 공헌에 공로가 인정된 자, 학생회 회장 및 학급 임원
4. 모범상 - 선행상, 봉사상, 효행상 등
5. 개근상 - 3년 개근상, 1년 개근상, 3년 정근상
6. 자기 주도 학습상 -서훈관 자율(주말)학습 성실상
7. 기타 - 예능상, 기능상, 체육상, 기타 학교 운영에 필요한 시상.

제54조 【시기】 시상은 졸업식, 학기 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실시한다.

제55조 【외부로부터의 시상】 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장 학생생활규정 제·개정¹¹⁾ 규정

제56조 【제·개정 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학생, 보호자, 교원 대표로 구성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이하, “제·개정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제·개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생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어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개정위원회의 위원은 학교의 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제·개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개정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 관계자, 보호자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⑥ 제·개정위원회는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전체 학생을 비롯한 교육 3주

11) 가.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및 동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나. 출처: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교육부, 2014)

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학생자치조직의 요구가 있거나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안에 서울학생인권조례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전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학내 공청회 및 그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은 학교 규정 제·개정에 대한 심의 절차에서 학생 또는 학생자치조직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하며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는 방향으로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제57조 【개정안의 발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제·개정위원회 재직 위원 1/2 이상의 동의
2. 재직 교원 1/3 이상의 동의
3. 학생 또는 학생 대의원 1/3 이상의 동의
4. 보호자(학부모)회 위원 1/3 이상의 동의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의 장 발의

②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시기(학기말 또는 학년말 등)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8조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학생, 보호자, 교원의 의사 반영 비율은 학교 규정에 따라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에서 정하되 가급적 학생의 의견을 50% 이상 반영하도록 한다.

제59조 【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자문을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및 학교의 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 규정 제·개정 심의 시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

견을 들을 수 있다.

제60조 【교육 및 연수】 학교의 장은 제·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을 공포하고,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며, 보호자에게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등으로 제·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61조 【적용 및 환류】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및 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학생생활규정의 준수 및 실천 정도를 평가하는 등 상시 개정 체제에 필요한 준거를 마련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6년 12월 6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8년 3월 2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3년 3월 2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 4월 19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9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4년 12월 4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 【근거법령 개정 시】 제1장 제3조 【근거법령】 등과 같이 본 학생생활규정의 상위 법령, 조례 및 지침 개정 시에는 기존의 학교 규칙을 제·개정하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개정된 상위 법령, 조례 및 지침 적용(적용일 포함)을 우선으로 한다.

<별첨 1> 제36조 관련 【징계 기준】

구분	항	징계 사유	징 계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퇴학 처분
예절	1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	●			
	2	용의복장이 바르지 못한 학생	●	●			
	3	언행이 불손한 학생	●	●			
	4	교사에게 불경한 언행을 한 학생	●	●	●		
	5	언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	●		
준법	6	인원 점검 시 대리로 대답한 학생	●	●			
	7	학교 단체 행사에 불참한 학생	●	●			
	8	학교 출입 시 월장한 학생	●	●	●		
	9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	●	●		
	10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	●	●	●	
	11	징계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
	12	교권을 모독한 학생(욕설, 폭언, 폭력 등)	●	●	●	●	●
	13	공문서 및 그에 준하는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학생	●	●	●	●	●
	14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
	15	불온 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	●	●	●	●
	16	사법기관에 구속 후 석방된 학생	●	●	●	●	●
	17	인장 및 제 증명을 위조한 학생		●	●	●	●
	18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	●	●	●
19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	●	●	●	●	
수업	20	수업을 거부한 학생	●	●			
	21	수업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	●	●			
	22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	●		
	23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동조한 학생	●	●	●		
	24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	●	
	25	백지 동맹을 주동하거나 선동한 학생	●	●	●	●	●
	26	시험 문제를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	●	●	●	●
근태	27	무단가출하여 사회 물의를 야기한 학생	●	●	●		
	28	미인정 지각, 미인정 조퇴, 미인정 결과를 한 학생	●	●	●		
	29	미인정 결석을 한 학생	●	●	●		
	30	상습적으로 미인정 결석을 한 학생	●	●	●	●	●
	31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10일 이상 미인정 결석을 한 학생	●	●	●		
	32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15일 이상 미인정 결석을 한 학생	●	●	●	●	
	33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20일 이상 미인정 결석을 한 학생	●	●	●	●	●
약물	34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	●			
	35	흡연 또는 음주를 연 3회 이상 상습적으로 한 학생		●	●	●	
	36	본드, 대마초, 환각제 등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복용한 학생			●	●	●

구분	항	행위내용	징 계				
			교내봉 사	사회봉 사	특별교 육	출석 정지	퇴학 처분
폭력	37	욕설을 남용한 학생	●	●			
	38	공공시설물, 집기류 등을 고의로 파손한 학생	●	●	●	●	
	39	폭력을 행한 학생 (단, 피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에 한함.)	●	●	●	●	●
	40	흉기를 소지하거나 폭행에 사용한 학생	●	●	●	●	●
	41	집단 폭행을 모의, 주도, 가담한 학생	●	●	●	●	●
퇴 폐 행위	42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		
	43	도박을 한 학생	●	●	●	●	
	44	불량서적(음란물 등)을 소지하거나 탐독한 학생	●	●	●	●	
	45	불량영상 등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학생	●	●	●	●	
	46	불건전한 이성 교제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	●	
금품	47	부녀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희롱한 학생		●	●	●	
	48	공납금을 유용한 학생	●	●			
	49	금품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 를 훼손한 학생	●	●	●	●	
	50	강매한 학생	●	●	●	●	
	51	금품을 절도한 학생	●	●	●	●	
집단	52	금품을 강탈한 학생		●	●	●	●
	53	불법집회 또는 불량서클 등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	●	●	●	●
	54	동맹휴학을 선동, 주동하거나 동참한 학생	●	●	●	●	●
	55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
	56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	●	●
	57	허가 없이 서클 등을 조직 운영한 학생		●	●	●	●
정 보 통신	58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학생		●	●	●	●
	59	불량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거래·복제·배포한 학 생	●	●	●	●	
	60	타인의 신상 정보를 도용하거나 불법 거래한 학생	●	●	●	●	
	61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 나 학교 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
	62	반사회적·반인륜적 인터넷 사이트(자살, 테러, 폭 력, 불법 거래, 불건전한 인터넷 방송 등)를 개설· 운영하거나 가입하여 사회 질서를 해친 학생		●	●	●	●
기타	63	해킹 등으로 학교와 그 구성원의 정보를 손상 또 는 유출한 학생	●	●	●	●	●
	64	벌점 10점 이상	●				
	65	벌점 20점 이상	●	●			
	66	벌점 30점 이상	●	●	●		
	67	벌점 40점 이상	●	●	●	●	
참고	68	징계처분 미이수 또는 불성실한 이행	●	●	●	●	●
	69	위의 각 항에 준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다.					
	70	동일 학년에 3회 이상 동일 징계를 받을 때는 가중 처벌한다.					
	71	징계 기준 외의 것은 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별첨2> 상점기준표

구분	항목	긍정적 행동의 내용	배점	
학습활동	1	아침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1	
	2	수업 전 준비, 수업 참여, 과제 이행 등이 특히 모범적인 경우	1	
	3	단원 및 형성 평가 성적을 크게 향상시킨 경우	1	
	4	학우의 교과 이해 및 학업성적 향상을 헌신적으로 돕는 경우	1	
선행 및 모범성	5	바르고 고운 국어 사용자로서 언어의 청정 소년으로 인정받는 경우	1	
	6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경우	2	
	7	학급 회의에서 모범 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2	
	8	학교 외부로부터 모범 학생으로 칭송을 받은 경우	3	
	9	부상당한 학우나 장애 학우를 순수하게 돕는 경우	1	
	10	웃어른에게 경애 정신을 발휘한 경우	1	
	11	실외 쓰레기를 줍는 습관적 솔선 봉사의 경우	1	
	12	교실 정돈, 오물 청소, 건물이나 시설물의 낙서나 껌 제거에 앞장선 경우	1	
	13	급식실 질서유지를 위한 도우미 활동을 한 경우	1	
	신고활동	14	교내외 시설의 위험 요인을 사전 신고한 경우	3
		15	습득물(소지품, 휴대전화, 금품 등)을 신고하여 주인을 찾아준 경우	1
		16	학교폭력의 동태를 사전 신고하거나 금품갈취를 신고, 예방한 경우	5
		17	어려움에 처한 학우의 문제 해결을 도운 경우	1
수상 및 교위선양	18	시·군·도·전국단위의 기관장 상 또는 표창을 받은 경우	3	
	19	매스컴 및 기타 매체로 학교를 빛낸 경우	3	
기타	20	상기 항목에는 속하지 않으나 교사의 전문적 판단으로 모범성이 인정되는 경우	1	

<별첨3> 별점기준표¹²⁾

		위반 항목	별점
예절	1	욕설, 언쟁, 따돌림, 괴롭힘을 한 경우	5
	2	품행불량으로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통보, 신고된 경우	4
	3	타인에 대한 공개적 비방 및 명예훼손의 경우	3
	4	네티켓(인터넷 통신 예절) 위반으로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준 경우	2
	5	고의적으로 학교의 공공기물을 훼손, 파손, 낙서 등을 한 경우	3
	6	남의 빈 교실이나 교무실에 무단 침입하는 경우	2
	7	껌, 침, 쓰레기 등을 함부로 뱉거나 버리는 경우	2
	8	교육용 컴퓨터를 교육 외의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경우	2
	9	단순한 다툼이나 실내 소란행위(공놀이, 뛰기, 고함 등)	1
	10	급식 질서 위반, 과자류 등의 교실반입 및 취식	1
	11	학급 활동의 기본 의무(청소, 주번 등) 실행에 태만한 경우	1
준법	12	고사 중 부정행위자 및 동조자	5
	13	교내외 음주, 흡연자 및 관련 물품 소지자와 그 동조자	3
	14	인터넷 도박, 사행성 오락(카드, 동전치기 등) 등을 한 경우	3
	15	음란물 반입, 탐독 및 시청을 한 경우	5
	16	교육활동 중 전자기기의 조작, 일과 중 도촬 등의 경우	3
	17	청소년 유해 물품(담배, 라이터, 사행성 용품 등)의 반입 및 소지 행위	2
	18	두발 규정 위반(파마, 염색, 장발 등) 및 복장 규정 위반(임의 교복 변형, 사복 착용, 슬리퍼 착용 등·하교 등)의 경우	1
	19	용의 불량에 대한 개선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21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	3	
학습 활동	22	1교시 이후 등교 및 단체 교육활동 불참(무단 지각·외출·조퇴·결과·장소이탈·취식)의 경우	1
	23	수업 전 준비, 수업 참여, 과제 이행 등이 불량한 경우	1
교권	24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5
기타	25	상기 항목에는 속하지 않으나 교사의 전문적 판단으로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	1

12) 동일 사안에 대하여 별점 부여 혹은 생활교육(소)위원회 회부 둘 중 한 가지로 진행함